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21

발의연월일: 2021. 1. 7.

발 의 자: 강득구·강민정·고영인

권인숙 · 김민석 · 김승원

김철민 • 민병덕 • 박성준

소병훈 · 양정숙 · 윤준병

이광재 • 이규민 • 이병훈

이성만・이수진(비)・이용빈

정청래 • 주철현 • 진선미

최혜영 · 홍성국 · 황운하

의원(24인)

제안이유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 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 계가 있음.

또한,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재설정과 역할 강화 등을 비롯한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평생교육의 제도 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 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 이용권을 정의하고, 이용권의 발급, 사용 등 운영과 관련 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호,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 나.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에 연구 기능,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의 협력 기능 등을 추가함(안 제19조).
- 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간 협력체인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 20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선정 및 이용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 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를 "국내외 평생교육기관·단체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원"을 "지원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의3을 제13호로 한다.

-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 1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2.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평생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평생교육진흥사업의 발굴 · 운영 및 지원
- 2.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 및 분석
- 3.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 7. 국가 및 시·군·구 간 연계 및 협력
-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 ③ 제1항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관리
-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는 보고의 접수

제45조의3 중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 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제4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 에"로 한다.

②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
	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
	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
	<u>다.</u>
<u> <신 설></u>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
	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u>있다.</u>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발
	급 대상 선정 및 이용 자격 유
	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
	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
	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 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있다.
-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 공받을 수 있다.

- 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자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 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 ·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이용자가 평생교육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 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 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 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 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

<신 설>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 ③ (생 략)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 2. (생략) <신 설>

- 3. 4. (생략)
-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 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통계센 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 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의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 3. 4. (현행과 같음)
- 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단체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 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 9. (생 략) <u>9의2.</u> (생 략) <u><신 설></u>

<신 설>

9의3. (생략) 10. (생략) ⑤ ~ ⑧ (생략)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제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 2. 평생교육 상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6
<u>지원 및 시·</u>
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7. ~ 9. (현행과 같음)
<u>10.</u> (현행 제9호의2와 같음)
1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평
생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u>사항</u>
<u>13.</u> (현행 제9호의3과 같음)
<u>14.</u> (현행 제10호와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ll 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u> 운영 등</u>) ①
<u>운영하여야 한다</u> .
②
1. 평생교육진흥사업의 발굴ㆍ
운영 및 지원
2.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 및 분석
3.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3. (생략)

3의<u>2.</u> (생 략)

4. (생략)

<신 설>

<신 설>

5. (생략)

<신 설>

<신 설>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cdot ② |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cdot ②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5.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7. 국가 및 시・군・구 간 연계 및 협력
-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 9. (현행 제5호와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시·도평생교 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 · 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 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도평 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현행과 같음)
-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 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 계인에 대하여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②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 • 2. (생 략)

-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 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1.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

③ (생략)

제45조의3(벌칙) 제24조제5항을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의 장이 하는 보고의 접수

③ (현행과 같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 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 받게 한 자
-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u>평생교육이용권을</u> 판매·대여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한 자
-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 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 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②</u> <u>제1항에</u>	따른 고	가태료	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	과 • 징수	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